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37
----------	-------

발의연월일 : 2026. 2. 11.

발 의 자 : 김동아 · 박균택 · 조계원
허성무 · 이건태 · 문대림
염태영 · 김문수 · 김준혁
여기구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가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화된 고금리 환경 속에서 금융회사의 대출 이자 수익은 급증하였으나, 주요 대출 차주인 개인이나 영세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음. 2023년도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액이 1조원을 상회하였으며, 서민금융보완계정 잔액이 지속 감소하는 등 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계정별 회계 구조로는 서민금융 재원의 통합 관리와 효율적 운용에 한계가 있고, 급격한 재정 수요 변동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 체계도 미비하여 재원

확보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상황임.

이에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서민금융 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기금으로 편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채권 발행 근거를 신설하여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고, 기금 관리 및 운용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 구성 기준을 신설함(안 제9조).

나.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함(안 제45조의2 신설).

다. 기금은 서민금융보증계정, 자활지원계정, 자산형성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며, 진흥원이 기금을 관리·운용함(안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 신설).

라.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고, 진흥원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 및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5조의5 신설).

마. 진흥원은 서민금융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서민금융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6 신설).

바. 진흥원 임원 및 업무 종사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함(안 제8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2호) 및 「부담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채무에 대하여 제3조에”를 “채무를 제45조의2에”로, “서민금융진흥원이”를 “서민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로 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제33조에”를 “제33조 및 제45조의6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기금에 관한 사항

8의3. 계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진흥원의”를 “진흥원 및 기금의”로 한다.

5.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9조제1항 중 “11명의”를 “10명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호에”를 “보호 또는 기금 관리 및 운용에”로, “6명”을 “3명”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사회에

관한 학식과”를 “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기금 관리 및 운용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의 추천 당시를 기준으로 소속 금융회사의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누적 규모가 가장 큰 3개의 금융협회의 장으로부터 1명씩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진흥원의”를 “진흥원의”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기금·계정의 관리 및 운용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원은”을 “진흥원 및 기금은”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채권의”를 “사채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의”를 “진흥원의”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진흥원”을 각각 “진흥원 및 기금”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계정”을 각각 “기금·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정 간”을 “기금·계정 간”으로 한다.

제4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서민금융보증계정으로의 전출
제2장에 제7절의2(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7절의2 서민금융안정기금

제45조의2(서민금융안정기금의 설치)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한다.

제45조의3(계정의 구분) 기금은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증계정 및
제55조의2에 따른 자활지원계정 및 제55조의6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5조의4(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진흥원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
입
3.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45조의5(기금의 회계 및 결산)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
도에 따른다.

② 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대한 결산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제45조의6(서민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①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서민금융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8절의 제목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서민금융보증계정”으로 한

다.

제46조의 제목 중 “서민금융보완계정의”를 “서민금융보증계정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서민금융보증계정”으로, “보완계정”을 “보증계정”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중 “보완계정의”를 “보증계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완계정은”을 “보증계정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보완계정의”를 “보증계정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보완계정의”를 각각 “보증계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진흥원에”를 각각 “기금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완계정의”를 “보증계정의”로, “진흥원에”를 “기금에”로 한다.

5의2. 제42조제1호의2에 따른 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제48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보완계정”을 각각 “보증계정”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보완계정의”를 “보증계정의”로, “15배를”을 “20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완계정의”를 “보증계정의”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보완계정”을 각각 “보증계정”으로 한다.

제54조제5항 중 “10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진흥원에”를 “기금에”로 한다.

제55조의4를 삭제한다.

제55조의5 전단 중 “제50조, 제51조, 제52조제3항 및 제53조부터”를

“제50조부터”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보완계정”을 “보증계정”으로 한다.

제2장에 제10절(제55조의6 및 제5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자산형성지원계정

제55조의6(자산형성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① 서민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하여 기금에 자산형성지원계정(이하 “자산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자산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자산계정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에 자산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제55조의7(자산계정의 용도) 자산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의 수행
2. 자산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4. 그 밖에 자산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라목 및”을 “라목·마목 및”으로,

“제4호”를 “제2호·제4호”로 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배상책임) ① 진흥원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진흥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임원은 진흥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진흥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면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7조, 제26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2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6까지,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52조, 제55조의2,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민금융안정기금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서민금융보완계정 및 자활지원계정은 제46조 및 제5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금에 설치하는 서민금융보증계정 및 자활지원계정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자활지원계정으로 수행하던 사업

중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산형성지원계정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이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함한다)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산형성지원계정으로 이관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신용보증”이란 개인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u>채무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u> 가.·나. (생략) 8. (생략) 제7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략) 8. <u>제3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u> <u><신설></u> <u><신설></u> 9. ~ 14. (생략) ② (생략)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 <u>채무를 제45조의2에-----서민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u> -----. 가.·나.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제7조(정관)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제33조 및 제45조의6에-----</u> ----- <u>8의2. 기금에 관한 사항</u> <u>8의3. 계정에 관한 사항</u> 9.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4. (생략)

<신설>

5.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략)

2. 진흥원의 부원장

3.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생략)

5.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 경우 2명은 제47조제2항

-----.

1. ~ 4. (현행과 같음)

5.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진흥원 및 기금의-----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10명의-----.

②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기획예산처장관-----

4. (현행과 같음)

5. -----보호 또는 기금 관리 및 운용에-----

-----3명 <후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개의 금융협회의 장으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가. ~ 라. (생략)

마. 그 밖에 금융·경제·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신설>

③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 신설>

④ (생략)

단 삭제>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기금 관리 및 운용에-----

6.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의 추천 당시를 기준으로 소속 금융회사의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누적 규모가 가장 큰 3개의 금융협회의 장으로부터 1명씩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후단 삭제>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이사회)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진흥원의 업
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이
사회를 둔다.

② ~ ⑤ (생략)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 3. (생략)

<신설>

4. ~ 16. (생략)

② ~ ④ (생략)

제26조(사업수행기관 지원) ① 진
흥원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
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33조(채권의 발행) ①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 제46조에 따른 서민
금융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채권

제16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기금·계정의 관리 및 운
용

4.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사업수행기관 지원) ① 진

흥원 및 기금은-----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사채의 발행) ① -----

-----진흥원의-----
-----.

을 발행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기탁된 기부금품을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8조(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①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정 상호 간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대차 등의 거래 및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③ 휴면계정과 다른 계정 간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진흥원 및 기금-----

-----.

② 진흥원 및 기금-----

-----.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회계의 구분처리 및 기금 · 계정 간 거래) ① -----
-----기금 · 계정-----
-----.

② 기금 · 계정-----

-----.

③ -----기금 · 계

거래 및 휴면계정에 대한 진흥
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회
가 정한다.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휴면계
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
용한다.

1. (생 략)

<신 설>

2. ~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정 간-----

-----.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서
민금융보증계정으로의 전출

2. ~ 5. (현행과 같음)

제7절의2 서민금융안정기금

제45조의2(서민금융안정기금의
설치)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한다.

제45조의3(계정의 구분) 기금은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증계
정 및 제55조의2에 따른 자활
지원계정 및 제55조의6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계정으로 구분한
다.

제45조의4(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진흥원이 관리·운용한
다.

<신 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
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
권의 매입

3.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
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45조의5(기금의 회계 및 결산)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기
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회
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운
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대한
결산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
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신 설>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제45조의6(서민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①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서민금융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절 <u>서민금융보완계정</u>	제8절 <u>서민금융보증계정</u>
제46조(<u>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u>)	제46조(<u>서민금융보증계정의 설치</u>)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 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u>서민금 융보완계정</u> (이하 “ <u>보완계정</u> ”이 라 한다)을 설치한다.	----- ----- ----- <u>서민금융 보증계정</u> ----- <u>보증계정</u> ----- -----.
제47조(<u>보완계정의 구성</u>) ① <u>보완 계정</u> 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제47조(<u>보증계정의 구성</u>) ① <u>보증 계정</u> 은-----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보완계정의 운용수익금</u> <u><신설></u>	5. <u>보증계정의</u> ----- 5의2. 제42조제1호의2에 따른 <u>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u>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 는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u>	7. <u>보증계정의</u> ----- -----
8. 그 밖에 <u>보완계정의 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u>	8. ----- <u>보증계정의</u> ----- ----- -----
② 금융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u>진 흥원에 출연</u> 하여야 한다. 다만,	② ----- ----- ----- ----- ----- <u>기 금</u> 에-----.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대
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
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
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
다.

1. ~ 5. (생략)

③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중 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개인에 대한 대출금의 부실률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제48조(보완계정의 용도)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 2. (생략)

2의2. 보완계정 부담으로 발행

-기 금에-----.

1. ~ 5. (현행과 같음)

(③) -----

-보증계 정의--

-기금에-----.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정-----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보증계정-----

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
3. <u>보완계정</u> 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u>보증계정</u> -----
4. 신용보증상품 개발 및 <u>보완계정</u> 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연구	4. ----- <u>보증계정</u> -----
5. 그 밖에 <u>보완계정</u> 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5. ----- <u>보증계정</u> -----
제49조(보증의 한도) ① 진흥원이 <u>보완계정</u> 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한도는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u>15배</u>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보증의 한도) ① ----- <u>보증계정</u> ----- <u>20배</u> 를-----.
② 진흥원이 <u>보완계정</u> 의 부담으로 같은 개인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② ----- <u>보증계정</u> -----.
제52조(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u>보완계정</u> 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신용보증을 받는	제52조(보증료 등) ① ----- <u>보증계정</u> -----

자의 신용도와 보완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

④ (생략)

⑤ 구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⑥ (생략)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①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에 자활지원계정을 설치한다.

② (생략)

제55조의4(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신용보증금액의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자활지원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보증계정-----

②·③ (현행과 같음)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5년간-----

⑥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① -----

--기금에-----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55조의5(준용규정) 자활지원계정의 보증업무에 관하여는 제50조, 제51조, 제52조제3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계정”은 “자활지원계정”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제55조의5(준용규정) -----
-----제50
조부터-----
-----, -----보증계정-----
-----.

제10절 자산형성지원계정

제55조의6(자산형성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① 서민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하여 기금에 자산형성지원계정(이하 “자산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u><신 설></u>	<u>② 자산계정은 다음 각 호의</u> <u>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u> <u>1. 정부의 출연금</u> <u>2. 자산계정의 운용수익금</u> <u>3. 그 밖에 자산계정의 구성을</u> <u>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자금</u>
	<u>제55조의7(자산계정의 용도) 자산</u> <u>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u> <u>사용한다.</u> <u>1.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의</u> <u>수행</u> <u>2. 자산계정의 조성·운용 및</u> <u>관리를 위한 경비</u> <u>3.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과</u> <u>관련된 조사·연구</u> <u>4. 그 밖에 자산계정의 설치 목</u> <u>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u>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 2조제5호가목·나목·<u>라목</u> 및 사목의 업무에 한정한다)·제4 <u>호</u> 또는 제5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 ----- -----<u>라목·마목</u> <u>및</u>----- <u>제2호·제4호</u>----- ----- -----

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 ⑤ (생략)

<신 설>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ten identical rows of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row consisting of three parallel dashed lines. The first row begins with a small black dot at its left end, serving as a starting point for writing. The rest of the page is blank, providing space for practicing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배상책임) ① 진흥원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진흥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임원은 진흥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진흥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면 그 책임을 경감

할 수 있다.